

제5장 재산상 손해 사례



제5장 재산상 손해 사례

사례 26

최저임금을 지키는 가게가 없다고 보도하면서, 보도내용과 무관한 신청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5서울조정2574·2575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김○○
피 신 청 인	한국방송공사 (KBS-2TV)
중 재 부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2015. 03. 19.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손해배상)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대학가 주변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최저임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보도하면서, 대학가의 몇몇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문을 자료 화면으로 방송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최저임금을 지키는 가게가 한 곳도 없다는 해당 보도의 멘트 전후로 신청인이 운영하는 호프집의 상호가 그대로 노출되어 피해를 입고 있다며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피신청인이 제작진의 단순 실수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8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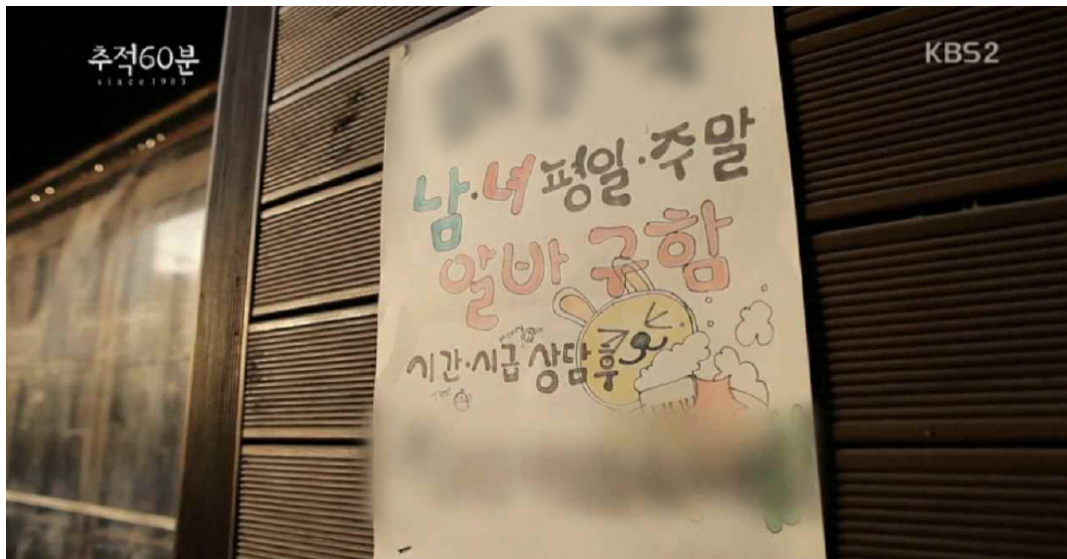
조정대상보도

- KBS-2TV - 〈추적 60분〉 프로그램 『당신의 열정을 혈값에 삼니다』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7일자)

■ 내 용

▷ 진행자

2015년 올해 법정최저시급은 5,580원입니다. 그런데 취재를 하다가 우리가 만난 청년들은 이 최저시급을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시급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전북 익산에 위치한 한 대학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주변 곳곳에는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가 붙어 있습니다.



▷ 진행자

최저시급 5,580원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2~3곳에 임금 문의하고 시급이 5,000원이라고 답변 하는 장면)

▷ 진행자

최저시급을 주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2015. 4. 30.까지 신청인에게 금 8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 까지 위 1항의 금액을 연 20%의 비율로 일할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1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5. 04. 14.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800,000원 지급

사례 27

신청인이 운영하는 캄보디아 식당에서 발생한 캄보디아 근로자들의 집단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 식당의 상호를 무단으로 노출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5서울조정2671~2676, 2015부산조정28, 29, 2015경남조정17, 18 각 손해청구
신	청	인 김○○
피	신	청
인		1. 한국방송공사 (KBS-1TV), 2. 케이비에스미디어(주) (KBS미디어), 3. 주식회사 매일방송 (MBN, 인터넷 MBN), 4. (주)조선방송 (TV조선, 인터넷 TV조선), 5. 주식회사 케이엔엔 (KNN, iKNN)
중	재	부 서울제2중재부, 부산중재부, 경남중재부
접	수	일 2015. 04. 03. (2015서울조정2671~2676, 2015부산조정28, 29) 2015. 04. 23. (2015경남조정17, 18)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TV조선, 인터넷 TV조선 : 손해배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MBN, 인터넷 MBN : 손해배상 - 피신청인 이의신청) 취하 (KBS-1TV, KBS 미디어)

사건개요

- 피신청인들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캄보디아 폭력사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 식당의 상호를 무단으로 노출하여 방송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손님들이 해당 보도 이후 식당에 오지 않아, 영업 손실을 입는 등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며 피신청인별 각 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TV조선(및 인터넷 TV조선)과 KNN(및 iKNN)은 각각 손해배상 2,000,000원과 손해배상 2,000,000원 및 기사삭제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또한 중재부는 MBN 및 인터넷 MBN에 대해서 해당 보도는 피신청인 측의 과실이 인정되고, 보도에 따른 재산상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도 일정 부분 인정된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 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KBS-1TV의 동일한 보도에 대해 서울중재부에서는 심리 전 취하가 되었고, 경남중재부에서는 조정불성립결정이 되었다.

조정대상보도 1

- KBS-1TV - 〈KBS 뉴스7〉, 〈KBS 뉴스9〉, 〈KBS 뉴스라인〉 프로그램 (2015년 4월 3일자, KBS 미디어 4월 3일자 다시보기면)
『김해서 캄보디아 근로자 집단 난투극... 7명 수배』, 『캄보디아 근로자 집단 난투극... 20여 명 중경상』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11일자)



조정대상보도 2

- MBN - 뉴스 8 프로그램 『캄보디아인 수십 명 패싸움... '정글도'까지 휘둘러』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11일자, 인터넷 MBN 뉴스 다시보기면)

■ 내 용

- ▷ 앵커 : 도심의 한 식당에서 캄보디아인 수십 명이 패싸움을 벌였습니다. 흥기와 각목까지 등장했지만, 경찰은 단순 폭력 사고로 처리하는 안일함을 보였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 기자 : 경남 김해의 한 외국인 식당. 계산대 근처에서 캄보디아인끼리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식당 안은 수십 명이 엉겨붙었고, 의자와 술병으로 상대방을 무자비하게 내리칩니다. 싸움이 고조되자 이번에는 정글도를 잡고 상대를 위협합니다. 부산과 경남 김해지역에 거주하던 캄보디아인 20여 명이 패싸움을 벌인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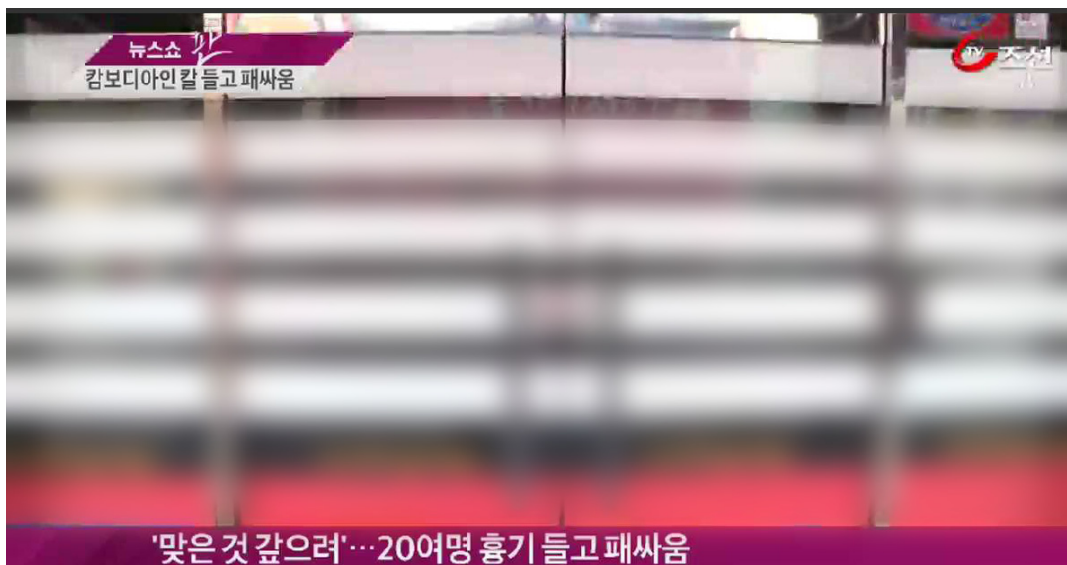


- ▶ 기자 : “주점 안에서 시작된 캄보디아인들끼리의 집단 패싸움은, 이곳 거리까지 나와서도 이어졌습니다.”
- ▶ 목격자 : “피를 흘리면서 전부 도망갔지. 피가 여기까지 흘렸어. 이게 전부 다 핏자국이야.”
- ▶ 기자 : 부산에 사는 캄보디아인이 김해에서 폭행을 당하자 보복성 원정 폭행이 일어난 겁니다. 경찰은 11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하고, 7명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단순 폭행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 ▶ 인터뷰 (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 : “아직 행동강령이 있다든지 조직성을 띄고 있지는 않습니다. 술과 밥을 먹으러 갔다가 우연히 식당에서 상대방을 만나게 되면서...”
- ▶ MBN 뉴스 강○○입니다.

조정대상보도 3

- TV조선 - 뉴스쇼 프로그램 『캄보디아인 칼 들고 패싸움』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11일자, 인터넷 TV조선 2월 11일자 다시보기면)

- 내 용 (전략)



조정대상보도4

- KNN - 뉴스아이 프로그램 『파리 트는 외국인 조폭세력, 경찰대응은 제자리』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12일자, iKNN 2월 12일자 다시보기면)
- 내 용 (전략)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각 금 5,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2015서울조정2675, 2676, 2015부산조정28, 29)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015서울조정2673, 2674)

조정불성립결정 (2015경남조정17, 18)

취하 (2015서울조정2671, 2672 사유: 관할변경)

조정성립사항-TV조선, 인터넷 TV조선

1.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방송은 2015년 5월 1일까지 신청인 식당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의 보도를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제1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5년 4월 22일까지 금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4. 피신청인이 위 제1항 및 제3항을 동일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이 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5. 피신청인이 위 제1항 및 제3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5. 04. 15.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2,000,000원 지급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MBN·인터넷 MBN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3,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04. 15.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피신청인 이의신청

조정성립사항-KNN, iKNN

1.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2015년 4월 29일까지 총 금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만일 피신청인들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2. 피신청인들이 위 제1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들이 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피신청인들이 위 제1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들 및 피신청인들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5. 04. 21.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2,000,000원 지급

